# 한국대학스키연맹 정관

2016년 07월 14일 개정
2025년 07월 02일 전면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로 설치된 한국대학스키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연맹은 대학 스키스노보드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한국대학스키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으로 KOREA UNIVERSITY SKI TEAMS ASSOCIATION"(약칭 "KUST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스키스노보드 종목을 통해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스키스노보드 종목을 통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회원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③ 연맹은 스키스노보드 종목을 소관 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협회의 가맹단체로서 대학부를 대표한다.

**제3조 (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연맹은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대학부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건의
2. 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전국규모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회원단체의 지도와 지원
4. 연맹 내 경기대회의 개최, 주관 및 기록관리
5.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업
6. 경기 기술에 관한 연구결과 설치. 관리
7. 대학부 지도자,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스키스노보드 종목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9. 스키스노보드 종목 관련 홍보 및 계몽
10.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협회가 승인하는 소관 범위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국선수권규모 이상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① 연맹은 회원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대학스키스노보드팀 및 동아리(이하 "대학스키팀"이라 한다)로 한다.
② 협회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연맹은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
③ 연맹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연맹 이사회가 의결하고 협회가 승인한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맹은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협회에 대한 연맹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⑥ 연맹은 대학스키팀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내에 학생위원회를 둔다.

**제6조 (협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협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소관 회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도 및 지원할 의무
4. 협회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을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
5. 승부조작 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연맹이 납부한 회비를 협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대학스키팀의 권리와 의무)** ① 대학스키팀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2. 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권리
3. 연맹의 정관, 제규정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학생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납부의 의무
② 학생위원회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에 대학스키팀의 의견을 건의 소청한 권리
2. 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권리와 의무
3. 연맹의 정관, 제규정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연맹에서 승인받은 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연맹에 보고할 의무
5.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학생총회 종료이후 15일내에 연맹에 보고할 의무
③ 제1항제4조에 따른 재원은 학생위원회가 개최하는 학생총회 및 주장단회의 개최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8조 (대학스키팀의 회원가입 유지 및 탈퇴)** ① 대학스키팀의 회원가입, 자격승격, 자격강등, 탈퇴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생위원회가 건의하고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결정된다.
② 대학스키팀의 자격에 관한 요건과 이사회 건의 절차는 학생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 (학생위원회의 감사 및 징계)** ① 연맹은 학생위원회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를 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맹은 학생위원회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연맹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및 학생회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징계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결과 비위가 있는 학생위원회 임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연맹은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하지 않는다.
②연맹은 이사회에 선임된 임원으로 대의원의 역할을 대신한다.
③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12조 (의장)** ①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스키팀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팀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와 학생위원회소속 학생임원(임기1년)의 경우는 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 (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①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임원

**제21조 (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 (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맹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한국대학스키연맹 홈페이지에 가입한 재학생 및 졸업생회원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연맹별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3 (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운영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2조의4 (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②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③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연맹에 귀속한다.

**제23조 (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4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협회의 회장선거, 시·도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협회, 시·도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연맹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 정관 제7조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이사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대표선수(상비군포함)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연맹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⑦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6조 (임원의 겸직제한)** ① 연맹의 대의원 및 임원은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스키·스노보드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연맹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연맹의 임원이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임원은 스키·스노보드의 다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협회, 시·도협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협회, 시·도협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의2 (연임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연맹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②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보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6.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7. 협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8.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제7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협회의 시·도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1조 (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연맹의 규정 등)** 연맹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연맹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규정 승인)** ① 연맹은 협회 정관 제5조의2(전국규모연맹체) 규정과 협회 전국규모연맹체규정에 따라 연맹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은 스키스노보드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스키스노보드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각종위원회

**제34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 설치하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원)**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및 동호인 등록비 또는 학생회비 등)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0조 (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협회, 시·도협회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협회, 시·도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2조 (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 (회계감사 등)** ① 연맹은 회계감사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며, 협회 정기감사를 받는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연맹은 체육회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와 협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장 사무국

**제46조 (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맹은 재정상의 이유로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없을 경우, 연맹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맹의 임원들로 하여 그 업무를 대행해 연맹의 업무를 원할히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연맹의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⑤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⑥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⑦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보 칙

**제47조 (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협회 대의원총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48조 (정관변경)**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연맹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정관 등 제정•개정)** ①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② 연맹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 (경영공시)**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부칙(2025.07.02)

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